제30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	1.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(강화) ㅇ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요구·조치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	규제심사 완료
		2.제3자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 범위(강화) ㅇ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기존 보건의료·통신·에너지 외 교육·고용분야 사업자 및 해당 분야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추가	본심사 상정
		3.개인정보 전송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 · 감독 범위(강화) ㅇ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일반 수신자의 시설·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 사항의 관리·감독을 위해 개보위가 기존 자료제출 요구에 더해 필요시 현장 점검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	본심사 상정
2	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 ·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(관세청)	1.단기 체류 외국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축소(강화) ㅇ 단기 체류 외국인의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을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	규제심사 완료

<table>
<tr><th>no.</th><th>법령명</th><th>규제내용</th><th>결과</th></tr>
<tr><td>3</td><td>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
(식품의약품안전처)</td><td>1.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대상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(신설)
ㅇ 행정처분 기준에 누락되어 있는 3개 영업종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
<table>
<tr><th>대상 영업종</th><th>위반행위</th><th>양형규정(예시)</th></tr>
<tr><td>도축업·집유업</td><td>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유통·판매 목적으로 반출</td><td>허가취소 및 제품 폐기 등</td></tr>
<tr><td>식용란선별포장업</td><td>검사 미실시, 검사 기록서 미보관 등</td><td>영업정지 및 허가 취소 등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식용란수집판매업</td><td>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확인·통보받았음에도 유통·판매</td><td>영업소 폐쇄 및 제품 폐기 등</td></tr>
<tr><td>검사불합격품 보관·운반·판매,검사불합격품 폐기 방법·기준 위반 등</td><td>경고, 영업정지 등</td></tr>
</table></td><td>규제
심사
완료</td></tr>
<tr><td>4</td><td>기구 및 용기 · 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
(식품의약품안전처)</td><td>1.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신설(신설)
ㅇ 영·유아용 고무제에 대한 유해물질 한도 기준 강화
– 고무과즙망, 고무빨대 등 영·유아용 고무제에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유해물질 한도 기준* 적용
* ▲잔류 납·카드뮴 10mg/kg 이하 ▲총용출량 40mg/L 이하 등</td><td>규제
심사
완료</td></tr>
</table>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(국민권익위원회)	1.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및 위반시 조치(강화) ○ 공직자 등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및 행위 신고 접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조치의무 부과 – 부정청탁 금지대상 행위* 및 예외적 허용 행위** 규정 * ▲검사, 평가 업무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▲재화 등의 매각, 교환, 사용, 수익, 점유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등 ** ▲업무 진행상황, 조치결과 등에 대한 확인·문의 등을 하는 행위 ▲업무에 관한 확인, 증명 등 신청·요구하는 행위 등 –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신고 접수시 소속기관장에 조사·확인,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의무 부과	본심사 상정
6	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오인 표시·광고의 표현(신설) ○ 살생물(처리) 미승인 제품의 표사광고에 제한되는 문구* 규정 * ▲유해생물을 제거, 무해화, 억제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 : 항균, 항공팜이, 항바이러스, 항진드기 등 ▲유해생물을 제거,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을 암시하는 표현 : 유해생물의 명칭 또는 유해생물의 명칭과 함께 효과·효능을 나타내는 수치를 사용한 표현 ▲특정 용도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: 방오, 방제, 방역 ○ 미승인 제품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효과·효능을 암시하는 그림·사진 도안 등의 시각적 표현 사용 금지	규제 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7	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(강화) ㅇ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가 관외 폐기물을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* 확대 * (기존)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% 이내 → (개정) 폐기물처리수수료의 20% 이내	규제심사 완료
8	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(기후에너지환경부)	1.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, 배점 및 평가 방법(신설) ㅇ 전력계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기술평가 항목과 비기술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항목별 배점 부여 ㅇ 업종 및 지역별 통과 점수 및 평가 항목 차등 규정 * ▲ 데이터 센터 : 수도권(75점), 비수도권(70점) ▲ 기타업종 : 수도권(70점), 비수도권(70점) ▲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: 수도권(28점), 비수도권(28점)	본심사 상정
9	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위험물 하역업자의 위험물 하역정보 제공 의무 신설(신설) ㅇ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게 위험물 하역 관련 정보를 반입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부과	규제심사 완료
10	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(신설) ㅇ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되, – 권리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요건 및 재허가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	규제심사 완료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(신설) ㅇ 「저작권법」에서 신설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*를 규정 * ▲ 회원이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허락권을 행사하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문서로 이용허락 사실을 통보할 것 ▲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임원의 보수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 해당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것 등 3.전문경영인제 의무 도입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(신설) ㅇ 「저작권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전문 경영인 선임의무와 관련하여 선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단체 범위* 규정 * 직전년도 사용료·보상금 징수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같은 연도 관리수수료 수납액이 20억원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4.전자총회 의무 개최 대상 단체의 기준 설정(신설) ㅇ 전자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규모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 5천억원 이상으로 설정 5.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의 요건(신설) ㅇ 전자총회 개최·운영에 필요한 절차* 및 요건 규정 * ▲전자총회 출석신청·허용 절차 ▲참석회원의 본인확인절차 등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6.이해충돌 방지·관리 기준, 절차 및 방법, 임원의 범위 기준(신설) ㅇ 「저작권법」에서 신설한 이해충돌 방지·관리 및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– 이해충돌 방지·관리를 위한 기준·절차 및 방법을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– 이해충돌 방지·관리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, 이사 및 감사 이상의 임원으로 설정 7.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(신설) ㅇ 「저작권법」에 신설된 제재 처분의 유형*에 대한 세부 처분 기준(영업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) 신설 * ▲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거부 ▲예산지침 미준수 등	
11	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전문경영인의 요건(신설) ㅇ 「저작권법」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전문 경영인 선임의무와 관련하여 선임대상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* 규정 * 문화산업·저작권위탁관리업체 및 공공·민간기업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	규제 심사 완료